



## 1 지원대상 청년

 ○ 아래 1-1, 1-2, 1-3(원칙 또는 특례 ①~⑦ 중 하나), 1-4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지워대상 청년에 해당됨

## **1−1**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
- \* 만 18세 미만인 자는「근로기준법」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기록사항)를 확인
- \*\*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(최고 만 39세로 한정)

## 1-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

####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-

- √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
  - \* 단,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→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
- √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 했거나 하고 있는 자
- √ 「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  -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  -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**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** 
    - \* 국세청 홈택스(https://hometax.go.kr)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
      - 나 홈택스 누리집 > 민원증명> 사실증명신청 >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

# 1-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(취업애로청년)

- 1 (원칙) "연속하여 6개월"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
  -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 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
    - \* (예) '22.2.23.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'22.8.23.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
    -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며, 자영업자 및 특고·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음

#### 확인 방법

- √ 고용센터는 바로원,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 등,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
- 2 (특례)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**①~**♂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
  - 1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    - 채용일 기준으로 고졸 이하 학력임을 증빙하는 청년
      - \*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
    -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「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」 (청년 본인 서명, [서식6-2])'를 받아 제출하고,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'고졸'에 체크

### 확인 방법

- √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「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」를 제출받아 확인
- ②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「고용보험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

-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☞ 취업지원프로그램은 [별첨10] 참조
-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, 섬 지역 거주자

#### 확인 방법

- √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
- √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 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려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
- **3**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\*하고 최초\*\*로 취업한 청년
  - \*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(IAP)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(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)
  - \*\* "최초"는 생애 최초가 아닌 "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"를 의미함

#### 확인 방법 🗕

- √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 여부 확인
- ◆ 청년도전지원사업\* 수료 청년
  - \*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

## 확인방법

- √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
- ⑤「아동복지법 제16조」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

### 확인 방법

- √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'보호종료 확인서'를 제출받아 확인
- 보호종료 확인서는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

- **6**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\*로 취업한 청년
  - \* "최초"는 생애 최초가 아닌 "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"를 의미함

#### 확인 방법

- √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「폐업사실증명원」(국세청 발급)을 제출받아 확인
-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\*미만인 청년
  - \*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(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)
  - \*\*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취업준비를 하지 못한 청년과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단기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청년을 보호하는 취지

##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

- √ 「고용보험법」상 일용근로 내역
- √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(상용, 자영업자, 특고 예술인 등)

#### 확인방법

- √ 고용센터는 바로원,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 등,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하여 확인
- 위 ✔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 중인 졸업예정자(수료자 포함)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업기간과 무관히 지원대상에 포함
  - \* 기업은 청년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

## 1-4 근로조건 등

- (근로계약)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- (보험적용)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- 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
- (임금수준)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

### <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>

- ▶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
- 참여기업에게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
- 기업의 구인공고는 '도약장려금사업'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게재됨
  - \* 단,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
- √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에 반드시 "도약장려금"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
  - - \*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업의 구인공고가 모두 '도약장려금 전용 채용관'으로 연동되어 게재됨
  - '22년 2분기경에는(정확한 시점은 추후 공지)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이후의 구인공고만 전용 채용관에 게재될 예정
    - \* 구인공고 제목에 "도약장려금"이 명시된 구인공고만 '도약장려금 전용 채용관'으로 연동되어 게재됨
- 참여기업에게 워크넷「취업희망풀」상의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
-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
  - \* 例> ▲(국취 참여 청년)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
    - ▲(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)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
    - ▲(보호종료아동) 보호종료아동 전담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
- ▶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(취업지원/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)는 취업애로청년을 '도약 장려금사업' 참여기업<sup>\*</sup>에 적극 알선
  - \*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
- ▶ (공통)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, 알선 시 "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"을 반드시 안내
  -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,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

# 별첨 10

#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관련 취업지원프로그램

\* 아래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(만 15~34세,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로 한정))이어야 함

연번	취업지원프로그램 (주관부처 및 운영기관)	이수한 사람의 범위
1	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(고용노동부 )	- (1)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(I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II유형의 청년유형 제외)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,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. 단,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		- (2)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(I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II유형의 청년유형 제외)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,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.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2	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「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」 (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)	<ul> <li>'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'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(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'기준 중위 소득'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).</li> <li>단,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~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li> </ul>
3	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「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」(고용노동부)	<ul> <li>'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'을 마친 사람.</li> <li>다만,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</li> <li>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li> </ul>
4	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(여성가족부)	<ul> <li>여성기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</li> <li>학교를 마친 사람</li> </ul>
5	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「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」및 「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」 (법무부)	<ul> <li>'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'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.</li> <li>단,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li> <li>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</li> </ul>
6	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「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훈련)」(고용노동부)	- '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훈련)'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

연번	취업지원프로그램 (주관부처 및 운영기관)	이수한 사람의 범위
7	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「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」 (고용노동부)	<ul> <li>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훈련)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</li> <li>또는 마친 사람.</li> <li>단,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li> </ul>
		<ul><li>-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'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</li></ul>
8	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「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」 (고용노동부)	<ul> <li>'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'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.</li> <li>단,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li> </ul>
9	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「자활 근로」(보건복지부)	<ul><li>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'자활 근로'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</li></ul>
10	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「기본 교육」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 하는 「취업워크숍」 및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「직업교육훈련」 (국방부, 국가보훈처)	-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,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'취업워크숍'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		<ul> <li>직업교육훈련(사회적응교육, 직업교육훈련,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)'을 2개월</li> <li>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</li> </ul>
11	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「취업지원프로그램(재도약프로그램)」 (고용노동부)	-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'취업지원프로그램(재도약 프로그램)'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'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)이하인 사람. -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작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12	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	<ul> <li>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 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</li> </ul>
13	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「일반고 특화훈련과정」(고용노동부)	-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」제6조제1항에 따라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'일반고 특화훈련 과정'을 마친 사람
14	고용위기지역 이직자 (고용노동부)	<ul> <li>「고용정책 기본법」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</li> </ul>
15	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(고용노동부)	-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
16	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(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)	다음 40대 일자리 지원대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(1)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'LH 소명터 프로그램' 및 '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' (2)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'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'(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,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) 및 '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'